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『통합방위예규』적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평시 재해재난 및 대테러작전과 전시대비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부칙조항에 추가신설

○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, 침투, 국지도발,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5837부대 6대대에서 작성한 "성주군 통합방위예규"를 적용한다.

나. 제명 띄어쓰기

○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4. 관련법령

○ 「통합방위법」제5조, 제9조, 제17조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본 개정 조례안은

○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, 침투, 국지도발,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5837부대 6대대에서 작성한 **"성주군 통합방위 예규"**를 조례부칙 조항에 명시하여 법적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서

○ **「관·군·경」**통합방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유관기관의 전·평시에 적용할 방침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함이며,

○ 또한 “**제명**” 일부를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.

□ **결론적으로,**

○ **개정 조례안은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